전주양현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시행 2019. . .] [2019.05.0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주양현초등학교 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주양현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전주양현초등학교의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3. "교직원"이란 전주양현초등학교의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등을 말한다.
- 제3조(인권 보장) ① 전주양현초등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인권은 「헌법」,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③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④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나 절차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인권 교육) ① 전주양현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제31조에 따른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해야 한다.
 - ⑤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해야 하며, 보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보호자는 전주양현초등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구성원의 역할) 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규정을 잘 지키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에 적합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의 권리

- 제6조(학습에 관한 권리)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제7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에 관한 권리)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하다.
-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1)
-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¹⁾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quot;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검사·평가 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 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2)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건강에 관한 권리)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월 1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²⁾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과 약속의 의미로 학생에게 권고하고 교육적 지도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증표로 반성문과 서약서를 강요하는 양심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 제22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의 생활

제1절 학교 안의 생활

- 제23조(기본 행동) ①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 ③ 학생은 따돌림, 폭력 등 전주양현초등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교직원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교육적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학생은 다른 학생과 교제 시 그 학생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⑨ 학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⑩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난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① 학생은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⑫ 학생은 교직원의 허락 없이 일과 중에 전주양현초등학교 교문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⑬ 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한다.

제24조(수업 태도 등) ① 학생은 수업 시간(시작과 끝)을 지킨다.

- ② 학생은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④ 학생은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⑤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면이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⑥ 학생은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교실을 청결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 ⑦ 학생은 학급의 시설, 물품, 기자재 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제25조(여가 활동) ① 학생은 여가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여가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교사의 허락 없이 휴식시간에 전주양현초등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④ 일과 중의 휴식시간에는 전주양현초등학교 운동장 등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스케이트, 보드 등을 타지 않는다.
- 제26조(용모)① 학생은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자유롭게 한다. 다만, 장소별·시간별로 정해진 용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지킨다.
 - ② 학생은 청결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이나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제27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의 시설물, 물품, 교구 등을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한 후에는 정리정돈을 한다.
 - ② 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 안의 시설물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을 사용하려면 교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시설사용 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전주양현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면 교사 등의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의 급식실,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질서를 잘 지키고, 위생과 청결에 유의한다.
 - ⑥ 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의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⑦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 시설물 등의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곧바로 교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제28조(소유물 존중)① 학생은 교직원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 물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 ③ 학생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 (절도행위 포함)한 경우 해당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2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차량이나 오토바이
 -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등
- 제30조(소지품 검사)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관계없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학생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 ④ 학생 소지품 검사는 비공개로 하며,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제31조(학생 개인물품 관리)① 제29조와 제30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 제32조(전자기기 관리)① 학생은 수업시간에는(방과후 수업 포함)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태블릿) 등)의 전원을 꺼서 자신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③ 교사는 학생이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학생이 시험 기간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제34조(체벌 금지) 전주양현초등학교 구성원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체벌을 비롯하여 어떠한 유형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제35조(교사의 권한) 학생 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 등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 환경 조성
- 3. 부당행위에 관한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 6.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전주양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 신청

제36조(교육적 조치)① 교사 등은 학생 상담을 통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 한다.

- ② 교사 등은 학생의 문제행동(학교폭력 사건은 제외)에 대하여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안의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 4. 전주양현초등학교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면 원상복구, 오염시키면 청소 명령
-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학교장은 교사 등이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반복해도 해당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전주양현초등학교 안팎의 생활에서 전주양현초등학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절 학교 밖의 생활

- 제38조(학교 밖의 생활)① 학생은 전주양현초등학교 밖에서 청소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 ② 학생은 교통규칙을 잘 지키며,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③ 전주양현초등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교사 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④ 학생은 술, 담배 등 유행성 약물(본드, 가스)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 제39조(보호자의 의무)①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학생)가 자율적이고 올바른 전주양현초등학교 밖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1. 자녀(학생)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2. 자녀(학생)의 전주양현초등학교 밖의 생활 중 친구 관계
 - 3. 자녀(학생)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
 - 4. 자녀(학생)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 ② 보호자는 자녀(학생)에게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곧바로 전주양현초등학교에 알리고 교사 등과 상담해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 제4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 생활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양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각 학년 생활교육업무 당담자, 학부모 대표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징계의 원칙)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1. 징계 대상 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권 부여
- 2. 징계 대상 학생의 인격 존중
- 3. 징계 절차 존중
- 4. 교육적인 징계를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 5. 징계 대상 학생의 개인 정보 노출 금지
- 6.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
- 7.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 고려

제4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³⁾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전주양현초등학교 내 봉사. 단,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정지
-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출석정지는 1회 10일 안, 연간 30일 안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 대상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 ④ 훈계·훈육, 교실에서의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본다.

제43조(징계의 방법)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 시간 등) 교사 등 지도 아래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 ②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사회봉사에 불참하거나 지역 공공기관 등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상 담·치료를 받아야 하며, 교육 이수 확인서나 상담·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가정학습을 해야 하며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보호·감독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주양현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³⁾ 복수 징계를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와 달리 반드시 하나의 징계만 할 수 있음. 징계의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정한 기간과 동일해도 됨

받을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44조(진술권 보장 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통화 일시와 통화 내용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사안을 심의하기 전에 간사로부터 사안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그 학생의 학교생활·품성· 가정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5조(심의 확정)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곧바로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심의 결과(징계 내용) 통보를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부터 3일 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6조(징계의 유보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징계 중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참여하는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징계 중에 있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의 해지, 징계의 경감, 징계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또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부칙 <20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